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수 원 지 방 법 원

제 5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61949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장
변 론 종 결	2016. 4. 4.
판 결 선 고	2016. 4. 25.

주 문

1. 피고가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14,888,900원, 농어촌특별세 18,324,330원의 부과처분[1]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233,213,230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주문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으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1. 처분의 경위

가.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8. 6. 26. 설립되어 2003. 12. 2.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해 해산간주된 주식회사 C에 관하여 2005. 6. 1.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면서 회사계속 등기를 마친 회사이고, 당시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은 5,000주, 자본금은 5,000만 원이었다.

나. 이 사건 회사의 2008. 2. 22.부터 2013. 4. 2.까지 주주명부상 주주변동현황은 다음과 같다.

	2008. 2. 22.		2012. 12. 20.		2013. 4. 2.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주식수(주)	지분율(%)
D	2,250	45	2,250	45		
E	2,250	45				
F	500	10				
원고					5,000	100
G			2,250	45		
H			500	10		
합계	5,000	100	5,000	100	5,000	100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2013. 4. 2.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100%)를 취득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가 규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2014. 11. 1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214,888,9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18,324,33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 2.말경 E가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2,250주(45%)를 원고의 장인인 G로 하여금, F이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 500주(10%)를 원고의 모친인 H으로 하여금 각 취득하게 하고, 2008. 3.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 2,250주(45%) 및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을 양도받아 [redacted]시 I 아파트 사업(이하 'I 아파트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던 것이므로, 원고가 2013. 4. 2.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2, 3, 5, 7, 8, 14, 1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회사의 임원에 관한 사항

원고의 장인인 G과 원고의 모친인 H은 2008. 2. 22. 각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는 2010. 4. 12.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2) D이 작성한 처분문서

① D은 2008. 3. 4. 원고에게 I 아파트 사업과 관련한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직무와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위임장에는 D 본인이 2008. 2. 22.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② D은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 2,250주(45%)를 양도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는 내용의 주식 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고(작성일자 2008년 이하 미기재), 위 주식 양수도계약서에는 D 본인이 2008. 7. 16.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다.

3) I 아파트 사업 관련

① 이 사건 회사는 2008. 6. 2. 군인공제회 등과 사이에 '이 사건 회사가 I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고, 군인공제회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사업자금 600억 원을 대여하되, 그 담보로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들은 이 사건 회사 주식 5,000주[D : 2,250주(45%), G : 2,250주(45%), H : 500주(10%)]에 관한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위 약정을 '이 사건 약정', 위 약정서를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 위 약정은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체결하였고, 위 약정서에는 D, G, H 명의의 주식양도담보설정승낙서가 첨부되어 있다.

② 원고는 2014. 11. 28.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이 사건 회사의 대여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군인공제회에 대하여 본인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에 관하여 근질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내용

F은 2005년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재직 중인 사람이고, F이 작성한 사실확인서(갑 제11호증의 2)는 "원고는 2008. 2.경 G과 H로 하여금 E 및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수받도록 하였고, 원고 본인 역시 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 및 D 명의의 주식 전부를 양수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형식적인 이전절차를 밟지는 아니하였다"는 취지이다.

라.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1) 상법 제335조 제3항 소정의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상법 제337조 제1항에 규정된 주주명부상의 명의개서는 주식의 양수인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다29661 판결 등 참조).

또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과점주주 사이에 주식 또는 지분이 이전되거나 기존의 과점주주와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으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니었던 자가 기존의 과점주주로부터 그 주식 또는 지분의 일부를 이전받아 새로이 과점주주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보유한 총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돌이켜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 2.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2,250주(45%)를 D으로부터, 2,250주(45%)를 G로부터, 500주(10%)를 H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명의개서를 마친 것은 사실이나, 앞서 설시한 인정사실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G과 H은 원고와 가까운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로 2008. 2. 22. 이 사건 회사의 이사로 취임하였던 점, ② D은 2008. 3. 4.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던 점, ③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2008. 6. 2. 군인공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회 등과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던 점, ④ 이 사건 약정서에는 G과 H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본인들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주식양도담보설정승낙서가 첨부되어 있었던바,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G과 H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친 사람들도 아니라는 사정을 감안하여 볼 때, G과 H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면 위와 같이 주식양도담보설정승낙서를 작성·제공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약정서에는 D이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본인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담보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가 담긴 주식양도담보설정승낙서가 첨부되어 있는 것 역시 사실이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D 명의의 명의개서가 마쳐져 있던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군인공제회 앞으로 근질권이 설정되지 아니하다가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명의개서를 마친 이후인 2014. 11. 28.에 비로소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하여 군인공제회 앞으로 근질권이 설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약정 체결 당시 D은 이 사건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가 마쳐져 있던 사람이었을 뿐이고 이미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여 이 사건 회사의 주주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회사성립 후 6월이 경과할 때까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회사 주식의 양도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인바, 원고, G, H이 D, E, F로부터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양도받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G, H은 가까운 친족 사이였으므로 위 주식 양수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위 주식 양도사실을 통지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⑦ F이 작성한 사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확인서는 이 사건 회사에서의 F의 지위, 역할과 그 내용 및 다른 사정들과 사이의 정합성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와 G, H은 늦어도 이 사건 약정 체결시점인 2008. 6. 2. 이전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같이 원고와 G, H이 늦어도 2008. 6. 2. 이전에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 일단이 되었다고 보는 이상 2013. 4. 2.자 과점주주 사이의 주식 이전은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2013. 4. 2.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박형순

판사 박소연

판사 문중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② 법 제47조 제2호에서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상법

제335조(주식의 양도성)

①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행하는 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7-01-04

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 주권발행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끝.